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대한 고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중심으로)

조용찬, 정지석

### I. 서론

2009년 1월 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시행과 함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는 그 근거 법령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및 교통영향평가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던 중 교통엔지니어링에 첫 발을 디는 신입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무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관련법령 등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후 내용은 관련 공무원(각 지자체)들과의 전화 인터뷰, 정보공개서비스(<http://www.open.go.kr>)의 정보공개요구, 법제처(<http://www.moleg.go.kr>) 법령검색 및 교통영향평가 실무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연혁, ②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③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현황, ④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구분된다.

### II. 본론

####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연혁

---

조용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john95@sdi.re.kr, 직장전화:02-2149-1096, 직장팩스:02-2149-1120  
정지석 : (주)연암기술공사 교통계획부, newwepper@hanmail.net, 직장전화:031-478-8727, 직장팩스:031-478-878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4월 1일 첫 시행 이후 11회의 개정으로 현재(2009년 1월 1일) 새로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당 법에 의해 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고, 1987년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0년 지방교통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평가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표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연혁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주요 내용

개정	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교통영향평가 대상	비고
'86.12 (제정)	제3조 인구 100만 이상, 인구 30만 이상 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3조 교통정비지역의 교통생활권,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	제11조 교통정비지역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및 시설	
'92.12	제3조 인구 10만 이상	상동	상동(제13조)	
'95.12	제3조 삭제	제4조 건교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	상동	
'02.01	제3조 인구 10만 이상, 건교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지역	제4조 둘 이상의 인접한 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	제13조 삭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99.12)
'09.01 (시행)	상동	상동	제15조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물(명칭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폐지('08.3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1999년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2008년 3월(2009년 1월 시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재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각 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는 그 적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다시 교통정비촉진법으로 그 적용 범을 이전해 왔으며 주된 법 개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2009년 교통영향평가의 명칭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되고 적용 범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재 축소되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법3조에 의해 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4년 전국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고시하였으며, 금번 도축법 개정과 함께 전국 17개 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제외 하였다.

〈표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구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sup>1)</sup>	시행 예정 <sup>2)</sup>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광역시	인천	전 지역
	부산	전 지역
	대구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광주	전 지역
	대전	전 지역
경기	㉠ 26개 지역(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양평군, 연천군 일부 지역 제외
	㉡ 26개 지역(가평군 전 지역, 양평군 일부 지역, 연천군 일부 지역 제외)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철원군 제외
	㉡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고성군, 철원군 제외)	
충북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제외
	㉡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영동군, 증평군(보은군, 옥천군 제외)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제외
	㉡ 진천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금산군(부여군 제외)	
경북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전 지역
	㉡ 전 지역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제외
	㉡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제외)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제외
	㉡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제외)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진도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고흥군, 신안군 제외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무안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진도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고흥군, 신안군 제외)	
제주	㉠ 전 지역	전 지역
	㉡ 전 지역	

자료 : 1) 국토해양부 고시, 2004.10.30

2) 시행예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 2007.9, 건설교통위원회)

주 :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3.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현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 8, 10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20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10년 단위의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신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 2009년 2월 현재 7개 광역시 및 58개 지자체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몇몇 지역은 수립 중 또는 수립 계획이 미정<sup>1)</sup>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현황

지역	수립	미 수립/수립 중	비고
7개 광역시	7	-	-
경기	23	3	-
강원/충청	10	5	-
전라/경상	25	6	-
합계	65	14	-

〈표 4〉 경기도 도시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현황

지역	기본계획	중기계획	지역	기본계획	중기계획
수원시	1997~2016	2007~2016	화성시	2003~2022	2003~2012
성남시	1995~2011	1999~2011	파주시	2006~2025	2006~2015
고양시	수립 중	수립 중	이천시	2005~2025	2005~2015
부천시	1992~2011	2008~2011	구리시	1995~2014	2005~2014
안양시	1995~2014	2002~2011	김포시	2001~2020	2007~2016
안산시	2000~2019	2000~2009	광주시	2008~2027	2008~2017
용인시	2000~2020	2000~2010	안성시	2006~2025	2006~2015
의정부시	2000~2019	2000~2009	하남시	1998~2017	2000~2009
남양주시	1997~2016	2002~2011	의왕시	고시 예정	2001~2010
평택시	변경 수립 중	변경 수립 중	오산시	2000~2019	2000~2009
광명시	1993~2012	2003~2012	동두천시	2006~2026	2006~2016
시흥시	1999~2018	1999~2010	포천시	수립 중	수립 중
군포시	1997~2014	2001~2010	과천시	수립 중	수립 중

1) 공무원 인터뷰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의 기준은 인구수로 최근 급감하는 지역 인구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류하고 있다고 함.

###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1, 2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표 5〉 지역별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09.2 현재)

구분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미구성	제외 권역
서울	구로, 성북,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서울특별시심의)금천,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
광역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심의)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심의)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부산 -	(부산광역시심의)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대전 -	(대전광역시심의)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광주 -	(광주광역시심의)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 -	(울산광역시심의)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경기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부천, 고양, 평택, 파주, 의왕, 김포, 남양주, 안산, 화성	(경기도심의)가평, 양주, 하남, 광명, 포천, 오산, 여주, 광주, 동두천, 안성, 의정부, 시흥, 과천, 이천, 구리, 군포	양평, 연천
강원	-	(강원도심의)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철원, 고성
충남	천안, 아산 (하반기시행)	(충청남도심의)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부여
충북	청주, 충주	(충청북도심의)제천, 청원,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보은
경남	창원, 진주	(경상남도심의)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 함안, 창녕
경북	포항	(경상북도심의)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전남	순천, 장성	(전라남도심의)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신안	진도, 해남, 강진, 장흥, 고흥, 영광
전북	-	(전라북도심의)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제주	-	(제주도심의)제주, 서귀포	-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①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영향권이 해당승인관청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 ② 승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 ③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교통분야 전문위원을 1/4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조사 결과 서울시의 경우 2009년 2월 현재 6개 구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는 13개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조례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회에서 공동심의를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상위기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자체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상위기관에 위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III. 결론

과거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지역은 전국이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한정하고 있다.

중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

회를 설치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일 경우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영향평가 당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별도로 조사하였으나, 향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나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찬



정지석